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51 - 06409호

시행일자 2022. 9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병·의원 발생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요청(환경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환경부 폐자원관리과-2859(2022.9.2.)

3. 환경부에서는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치료체계(호흡기진단클리닉 등)가 도입되면서 관계 부처 협의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일반 병·의원(격리병원 외)에 내원 진단·치료 시 발생하는 폐기물*을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'코로나19 폐기물 안전 관리특별대책(제6판) '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.

* 자가진단키트(RAT포함), PCR, 보호장비

4.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반 병·의원에서 확진자를 입원치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추가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2]에 따라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,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'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'로 신속·안전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붙임 : 환경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